우송대학교 직무발명규정

제 정 2007. 9. 개 정 2017. 10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, 우송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교직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.장려하여 교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,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 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.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발명"이란,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
 - 나.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
- 2. "직무발명"이란, 교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에 속하며,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.(개정 2017.10.17.)
- 3. "자유발명"이란,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.
 - 가.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
 - 나.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
 - 다.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
- 4. "발명자"란,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.
- 5. "교직원"이란, 대학의 교원.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- 6. "출원유보"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,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 (권리의 승계) ①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(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)는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교직원이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

- 제4조 (발명의 신고)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발명신고서【별지 제1호 서식】
 - 2. 양도증【별지 제2호 서식】
 - 3. 발명의 내용 설명서【별지 제3호 서식】
 - 4. 선행기술 조사서(외국 출원의 경우에 한함)【별지 제4호 서식】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(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)가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가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5조 (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)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,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【별표1】의 발명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교직원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(【별지 제5호 서식】)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6조 (승계시점 등) ① 산학협력단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 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.
- 제7조 (이의신청)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 (【별지 제6호 서식】)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1.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
 - 2.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
 -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한 발명자(이하 "이의신청인"이라 한다)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 청인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 기관의 장에게 문서 (【별지 제7호 서식】)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시청을 할 수 있다.
- **제8조 (자유발명의 양도)** ① 발명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 할 수 있다.
 - ② 발명자가 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에 따를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,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.

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

- 제9조 (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)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 의위원회(이하 "위원외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0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산학협력단의 특허업무 책임자로 한다.
- 제11조 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.결정한다.
 - 1.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
 - 2.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
 - 3. 직무발명의 출원(해외출원 포함), 등록 여부
 - 4.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
 - 5. 제13조제4상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.포기, 권리의 유지.포기 등의 여부
 - 6.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.실시허여.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
 - 7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
 - 8.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.지급기준.산정방식.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
 - 9.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
 - 10.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
- 제12조 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 -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,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.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-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

- 제13조 (출원 등)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("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"을 포함한다. 이하 본조에서 같다.)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,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(【별지 제8호 서식】)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혁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(【별지 제8호 서식】)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. 포기, 권리의 유지.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제14조 (비용부담)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계약이 있는 경우 그 에 따른다.

제5장 보 상

- **제15조 (보상금의 지급)**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 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.
 - 1. 출원보상금 :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
 - 2. 등록보상금 :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
 - 3. 실시.처분보상금 :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,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
 - 4. 출원유보 보상금 :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.포기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
 -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.승급.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.지급기준.산정방식.지급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16조 (공동발명자의 보상)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 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신고 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.
- 제17조 (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)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.
 -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8조 (보상금의 불반환)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권리가 특허법 제 33조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장 보 칙

- 제19조 (비밀유지의무) ① 발명자, 발명과 관계된 자,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자,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

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- ③ 제1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, 발명과 관계된 자,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.졸업.수료.자퇴 또는 퇴학(이하 "퇴직 등"이라 한다)한 후에도 적용한다.
- 제20조 (출원의 제한 등) 발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때 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,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21조 (손해배상) 발명자가 제4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,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**제22조 (협력의무)** 발명자는 출원.심사.심판.소송.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3조 (퇴직 등 후의 취급)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.
- 제24조 (준용 및 적용범위)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, 컴퓨터프로그램, 저작권,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.
 -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직원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조치)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접수번호		
접수일자		
접 수 자	직위:	
省 T イ 	성명:	(인)

발 명 신 고 서					
발명의 명칭	한글 : 영문 :				
	성 명 한글 : 영문 : 한글 :	지분(%)	소-	속	전화번호
발 명 자	영문 : 한글 : 영문 : 한글 :				
관련연구과제 및 자금지원	영문 : 연구과제명 지원기관			연구기관	
출원 희망국					
발 명 의 공개여부 및 계획	□ 논문발표 발표일 : 년 월	. □ 학술지 <i>></i> 일 [첨부			│ □ 기타 학술지명 등)사본]
발명의 종류	□ 작	무발명		□ 자유별	날 명
발명의 현단계	①아이디어단계 ②연구개발진행중 ③연구개발완료 ④시제품제작중 ⑤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				
사업화를 위한 =	☐ YES		□ NO		
	등분야(구체적으로)			T	
	것으로 예상되는 기업	1.		2.	
	관리여부 및 소재	☐ YES()	□ NO	
본 발명:					
(특허, 논문, 시장정보) 키워드					
위의 발명을 우송대학교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.					
		년 신고(대표)			일 (인)
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양 도 증 (지분 표시)					
발명의 명 칭					
출원번호 (등록번호)					지분율
양 도 인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~	
	주 소				
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~	
	주 소				
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~	
	주 소				
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~	
	주 소				
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~	
	주 소				
	기 타				
양 수 인	성 명	우송대학교선	· 산학협력단 단	- 장	
	주 소				

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우송대학교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.

년 월 일

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

[별지 제3호 서식]

발 명 설 명 서(명 세 서) -1		
1. 발명의 명칭 (한글, 영문)		
2. 도면의 간단한 설명	(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)	
3. 발명(고안)의 상세한 설명	【발명의 목적】 3.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.2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 3.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(발명의 목적)	

[별지 제3호 서식]

	발 명 설 명 서(명 세 서) -2
	【발명의 구성】
	3.4 발명의 구성 및 작용
3. 발명(고안)의 상세한 설명	가)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
	나) 기능 및 작용
	다) 실시예
	【발명의 효과】
	4.1 청구항1
4. 특허청구범위	4.2 청구항2
	4.3 청구항3

[별지 제4호 서식]

선행기술 조사서				
제출자(발명자)			접수번호	
발명의 명칭			제출일자	
		1. 선행기술과의 대비		
기존 특허 (제목, 특허번호, 출	출원일자)	본 발명 대비 신규성 (어떤 점이 새로운가?)		대비 진보성 어떻게 다른가?)
2. 관련자료(참고문헌, 학회지 등)				
문헌명, 저자, 페이	이지 등	기술 요약		년과 비교시 영의 특징

[별지 제5호 서식]

심사결과 통지서		
문서(접수)번호		
수신(발명자)		
발명의 명칭		
제 목		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
		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5조에 따라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		결 정 사 항
1. 직무발명 여부		
2. 회사의 승계 여부	<u>.</u>	
3. 특허성의 등급결정		
4. 국내외 출원여부		
5. 출원시 심사청구여부		
6. 기타		
20 년 월 일 우송대학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(인)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(인)		

[별지 제6호 서식]

이 의 신 청 서					
	성 명		주	민등록번호	-
신청인	소 속				
	주 소				
접수	일자	20		접수번호	
발명의	명칭				

[신청이유]

1.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
2.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
상기 본인은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의거 20 년 월 일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20
 년
 월
 일

 신청인:
 (인)

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장,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

[별지 제7호 서식]

이의신청결정 통지서			
문서번호			
수 신			
발명의 명칭	발명의 명칭		
제 목	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		
우송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			
결 정 사 항			
1. 신청 이유(요약)			
2. 결정 내용			

20 년 월 일 우송대학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(인)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(인)

[별지 제8호 서식]

	출원 통지서
문서번호	
수 신	
발명의 명칭	
발 명 자	
우송다	H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13조에 따라
귀하	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.
권리 내용	
출원 여부	
출원 일자	출원 번호
미출원 이유	
	20 년 월 일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(인)
	첨부 : 출원명세서